

의안번호	제175호
의결 연월일	2011년 6월 일 (제 301 회)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광진 의원
발의연월일	2011년 6월 2일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
----------	-----

발의연월일 : 2011. 6. 2.

발 의 자 : 권기수, 김동환, 김재종,  
이수완, 임헌경, 임 현

## 1. 개정이유

-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무 규정 및 권장 사항을 규정

## 2. 주요내용

- 가.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제3조제5항, 제4조제2항  
신설)
- 나.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하여 도지사와 지역건설산업체의  
권장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1 신설)
- 다.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정비  
(제5조제2항제1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4항,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인 → 명, 잔임 기간 → 남은 기간 통할 → 총괄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균형건설국 도로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충청북도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지역건설근로자 고용)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도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들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7호 중 “부위하는”을 “회외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13조 중 “잔임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동할”을 “총괄”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16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2. (생략) <b>&lt;신설&gt;</b>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2. (현행과 같음) <b>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충청북도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b>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2. (현행과 같음) <b>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충청북도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b>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2. (현행과 같음) <b>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충청북도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b>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2. (현행과 같음) <b>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충청북도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b>
제3조(도의 책무) ① ~ ④ (생략) <b>&lt;신설&gt;</b>	제3조(도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b>⑤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	제3조(도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b>⑤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	제3조(도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b>⑤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	제3조(도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b>⑤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b>&lt;신설&gt;</b>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 ----- ----- ----- <b>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b>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 ----- ----- ----- <b>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b>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 ----- ----- ----- <b>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b>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 ----- ----- ----- <b>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b>
제5조(분할발주 등) ① (생략) ② (생략)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b>&lt;신설&gt;</b>	제5조(분할발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b>제8조의1(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b> <b>② 지역건설산업체는 도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	제5조(분할발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b>제8조의1(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b> <b>② 지역건설산업체는 도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	제5조(분할발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b>제8조의1(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b> <b>② 지역건설산업체는 도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	제5조(분할발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b>제8조의1(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b> <b>② 지역건설산업체는 도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9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기능) (생략).</p> <p>1.~6.(생략)</p> <p>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제11조(기능) (현행과 같음)</p> <p>1.~6. (현행과 같음)</p> <p>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12조(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12조(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1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제1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p> <p>② (생략)</p>	<p>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회의) ①~③(생략)</p> <p>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균형개발과장이 된다</p> <p>⑤ (생략)</p>	<p>제15조(회의) ①~③(현행과 같음)</p> <p>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균형개발과장이 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관련법령 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9999호, 2010. 2.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2010.2.4>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